

보도시점 2026. 7. 22.(수) 10:00 / 배포 2026. 7. 22.(수) 08:30

다단계판매 총 119개사... 신규등록 6건, 폐업 3건

-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2026년 2분기(2026.4.1.~2026.6.30.) 다단계판매*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.

*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·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임

※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

2026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,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, 폐업 3건, 상호·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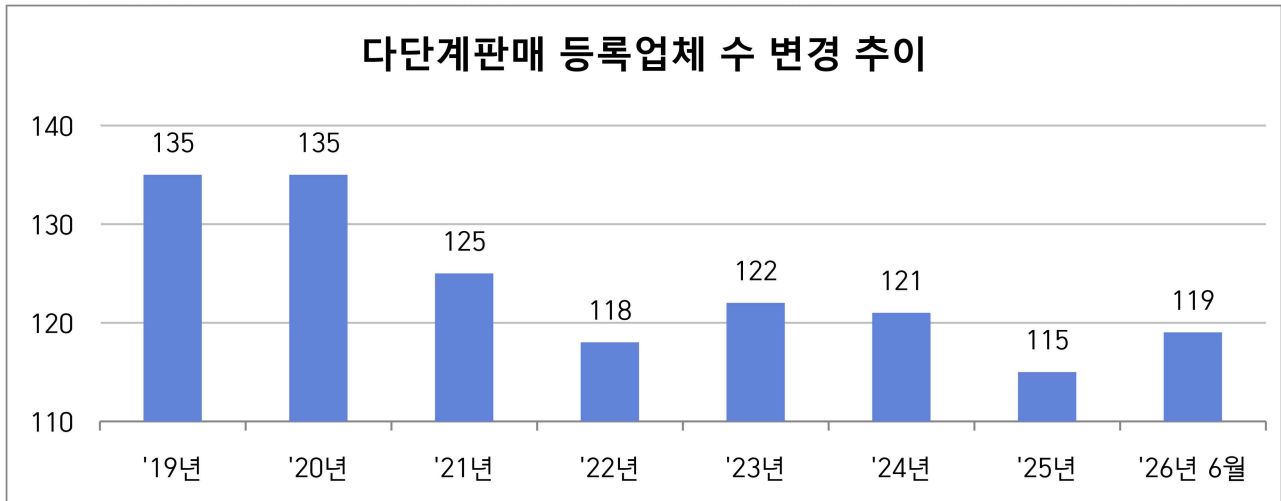
< 2026년 2분기 신규등록 · 폐업 · 정보 변경 현황 >

해당 사업자 수	변경 건수	변경 사항		
		신규등록	폐업	상호·주소 변경
20개	21건	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(유) 엑스피겨스(주) (주)에이피아이엠 엔엘리스트아시아(유) (주)더엘리온 퓨처헬스코리아(유) 6건	(주)골드트리글로벌 (주)메타이십일글로벌 (주)젼마코리아 3건	(주)씨엔뷰, (주)카리스, 피앤피글로벌, (주)파이메타, 아오라파트너스(유) 등 12건

해당 기간 중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(유), 엑스피겨스(주), (주)에이피아이엠, 엔엘리스트아시아(유), (주)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, 퓨처헬스코리아(유)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·도에 신규등록하였다. 반면,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(주)골드트리글로벌, (주)메타이십일글로벌, (주)젼마코리아 3개사이다.

※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·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한편, '26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·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(유) 1개사로 확인되며,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, 주소를 2차례 변경하였다.



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,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**다단계판매업 등록, 휴·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**하여야 한다.

※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) 상단 메뉴 ‘정보 공개’ → ‘사업자 정보 공개’ → ‘다단계 판매사업자’에서 확인 가능함

특히,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또한,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,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,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※ 26년 2분기 중에는 폐업 신고 전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 판매업체 없음

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,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**계약서를 작성·발급*하도록** 요구하고, **계약서 내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**하여야 한다.

*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16조

[주요 피해 사례]

- A씨는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(대금 4,400,000원)을 체결하고 **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** 대금을 결제함(지인을 통한 계약)
- A씨는 7일이 지난 후, 아직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자 B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**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, 다단계 사업자 B가 대금 환급을 지연하다가 1달쯤 지난 후 임의로 5%(220,000원) 공제한 4,180,000원 환급**함
- A씨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계약서 미발급, 재화대금 미환급 등 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**잔여 대금 환급 요구**

아울러,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다음, **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*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**가 발생할 수 있어 **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**

* ▲계약 체결 시의 사업장이 아닌 타 지역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청약철회를 하도록 하는 경우, ▲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사업자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, ▲상담원과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장치한 경우 등(「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」)

※[붙임1]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내역

※[붙임2] 불법 다단계 등 피해예방 수칙
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은애 (044-200-4430)
		담당자	조사관	이희경 (044-200-4438)



붙임1

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내역 ('26년 2분기)

1. 2026년 2분기 중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(6개사)

연번	지역	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	전화번호 (전자우편주소)	등록일자	피해보상 공제가입
1	서울	제957호	나투라비탈리스 코리아(유)	최민근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43, 20층 2003호, 2004호	1661-0797 (choi@naturavitalis- korea.com)	'26.4.6	한국특수 판매공제 조합
2	인천	인천 -2026 -1호	엑스피겨스(주)	인필두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, 에스동 702호	032-205-2303 (ceo @xfigures.io)	'26.4.10.	한국특수 판매공제 조합
3	서울	제958호	㈜에이피아이엔	이종현, 한동욱	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23, 1층(동교동)	1800-5652 (lee2660 @h2va25.com)	'26.4.15	한국특수 판매공제 조합
4	서울	제959호	엔엘이스트 아시아(유)	강성국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, 제비동 203호(대치동)	1877-0037 (onemoreplz @nlstar.co.kr)	'26.4.22	한국특수 판매공제 조합
5	세종	세종 - 2026 - 제001호	㈜더엘리온	이미희	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, 비동 201호, 204호	044-905-8249 (bongsoo7758 @gmail.com)	'26.4.28.	한국특수 판매공제 조합
6	경기	제2026 -01호	퓨처헬스 코리아(유)	YANG KUO CHIUNG (양국군)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10, 제비동 제13층 제비비 13-1302호 (덕은동, 지엘메트로시티한강)	02-3159-3002 (kkyang @fhk.co.kr)	'26.5.14.	직접판매 공제조합

2. 2026년 2분기 중 휴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: 해당없음

3. 2026년 2분기 중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(3개사)

연번	지역	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	폐업일자
1	대구	대구2026-1호	㈜골드트리글로벌	정지용	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, 703, 704호(상인동, 상인프라자)	'26.4.16.
2	서울	제947호	㈜메타이십일글로벌	이한석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37, 5층(서초동)	'26.6.9.
3	인천	인천-2026-2호	㈜젼마코리아	이우종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48, 오케이주식회사 에이동 1층 2호	'26.6.29.

4. 2026년 2분기 중 등록이 말소된 업체: 해당없음

5. 2026년 2분기 중 등록취소된 다단계판매업자: 해당없음

6. 2026년 2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·주소 변경(12개사/12건)

연 번	지역	등록 번호	상 호		주 소		전화번호 및 연락처		변경 일자
		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	
1	경기	제2025-6호	(주)씨엔뷰		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34, 제9층 제904호 (광명동, 광명퍼스트스위첸)	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, 지하1층 제엘135 에이호 (일직동, 지아이디씨)	1522-1296		'26.4.1.
2	경기	제2013-3호	(주)카리스	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길 5, 7층, 8층 801호 (서현동, 엔타운빌딩)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길 5, 7층 (서현동, 엔타운빌딩)	1644-3066		'26.4.1.
3	서울	제924호	피애플글로벌	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-10, 2층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1, 10층(잠실동)	02-6482-2882		'26.4.10
4	충북	충북-2024-1호	(주)파이메타	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125		cskr@metawellkorea.com	cskr@pi-meta.com	'26.4.20.
5	서울	제932호	아오라파트너스(유)		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55, 4층(삼성동)		02-1544-8816	1544-8816	'26.4.23
6	인천	인천-2026-2호	(주)젼마코리아*		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, 3층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48, 에이동 1층 2호	02-6929-1359		'26.4.28.
7	인천	인천-2026-3호	(주)지씨엔코리아		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98, 대륭 포스트6차 1202호	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9-2 하이존 504호	02-866-2994	032-513-2994	'26.4.28.
8	서울	제686호	(주)엔잭타	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, 12층(대치동)	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23, 5층(역삼동)	02-565-4011		'26.5.14
9	서울	제950호	(주)셀럽코리아		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1, 217호	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58, 5층 503호	1544-9780		'26.5.21
10	서울	제921호	(주)지티비코리아	(주)지푸코리아	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26, 5층(암사동)		02-6951-5866		'26.5.22
11	서울	제936호	트루비코리아(유)	진지노코리아(유)	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, 6층(서초동, 서희타워)		1899-1430		'26.5.27
12	서울	제782호	(주)바라글로벌		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, 1층(역삼동)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8, 4층(역삼동)	02-1661-3265		'26.6.8

* (주)젼마코리아의 경우 소재지 변경 후 폐업

7. 최근 3년('23년 3분기~'26년 2분기)동안 5회 이상 상호·주소를 변경한 다단계판매업자(1개사)

지역	등록 번호	상 호	변경내역	
			상호변경	주소변경
서울	제932호	아오라파트너스(유)	바이디자인코리아 유한회사 -> 제이브 이글로벌 유한회사(23. 7. 10.) 제이브이글로벌 유한회사 -> 한국프라이프 유한회사(25. 9. 26.) 한국프라이프 유한회사->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(25. 12. 1.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, 신일빌딩 2층 ->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1, 10층 1004호(25.6.27)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1, 10층 1004 ->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55, 삼성동, 4층(25.10.10)

- ①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세요.
 - 매출액의 35%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해야 함
- ②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마세요.
- ③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.
 - 공정거래위원회(www.ftc.go.kr), 시·도의 담당과, 직접판매공제조합(www.macco.or.kr, 02-566-1202)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(www.kossa.or.kr, 02-2058-0831)에서 확인 가능
- ④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‘공제번호통지서’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세요.
 -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,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
 - ※ 거래명세서의 공제번호로 공제조합누리집에서 공제번호조회시 공제번호통지서 출력 가능
- ⑤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하세요.
 -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
 -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함
 - ※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,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
- ⑥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서, 지자체, 공제조합에 신고하세요.
 -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) 메인화면 하단 가운데 불공정거래신고
 - 공정거래위원회 6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
 - ※ 서울: 02-2110-6172, 경인: 031-8090-4020, 부산: 051-460-1033, 광주: 062-975-6834, 대전: 042-481-8014, 대구: 053-230-6300
 -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및 각 지역 관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
 - 직접판매공제조합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누리집 신고 게시판
- ⑦ 사진,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.
 - 불법 다단계업체는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 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거래 시 주의 필요